

검찰 수사 의뢰서

1. 취 지

- 최근 홈플러스(주) 임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회원 동의 없이 보험사에 불법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를 기소하며 개인정보를 단순한 영업판촉이 아닌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번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는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기업의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거래한 시기가 지난 2014년 카드사 및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온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시기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다시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스팸전화, 스미싱 등의 피해가 근절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사법절차(형사재판)가 진행 중이고, 시간이 지나 사법 판단이 내려지면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피해 고객들에게 유출사실 등을 통지하지 않아 그 피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른 열람 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제공현황(보험회사에 제공한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 이라고 답변하여 또 다시 피해 고객들을 경악케 하였습니다.
- 이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삭제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전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를 수사의뢰하여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시정하고자 합니다.

2. 수사의뢰 내용 및 근거

1)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 미통지 관련

- 홈페이지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피해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사건의 개인정보 불법 제공 사실을 전혀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경품행사를 중단하고, 관련 사업을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있다’는 짝박한 공지문만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언제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불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시행령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이해하는 ‘유출’의 의미에 따라서 해석해야 합니다.
-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유출은 “1.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러 내보냄”, “2.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의 뜻으로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출은 2의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 즉,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조직 밖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 버리거나, (의도적으로) 내보내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조직의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유출에 해당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용어사용의 예를 살펴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을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으로 나누고 있고,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한 규정에서도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을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여기서 ‘유출’은 ‘분실, 도난, 변조, 훼손’을 뺀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 ‘유출’보다 협의의 ‘유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협의의 ‘유출’에는 분실, 도난, 변조, 훼손이 아닌 개인정보 침해가 해당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인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제공은 협의의 ‘유출’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한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피해 고객들에게 어떤 통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가 사건 발생 이후 추가로 저지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2) 홈플러스의 제3자 제공현황 삭제 관련

-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 고객들이 법률에 따른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지난 3월 23일 관련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 할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홈플러스 회원은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물론 이후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홈플러스의 제3자 제공현황 삭제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험사로 판매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정지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싶어도, 홈플러스의 무책임한 삭제로 인해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진행예정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만약 홈플러스가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더욱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삭제하여 고객들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3. 결 론

-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시점에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이익추구만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홈플러스 웨밀리카드 가입자가 1,600만 여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객들의 피해 규모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더욱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존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기소한 내용과 더불어 시민단체들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규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